

# 평창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54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2.19.

제출자 : 평창군수

## □ 제안이유

- 평창군도시계획조례가 2001. 5.12 재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내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행위제한 사항을 완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함.

## □ 주요골자

- 전용주거지역(제1종·제2종)에서의 행위제한 완화(안 별표1·2)
- 일반주거지역(제1·2·3종 및 준주거)에서의 행위제한 완화(안 별표3·4·5·6)
- 상업지역(일반·중심·유통·근린)에서의 행위제한 완화(안 별표7·8·9·10)
- 공업지역(일반·전용·준공업)에서의 행위제한 완화(안 별표11·12·13)
- 녹지지역(보전·생산·자연)에서의 행위제한 완화(안 별표14·15·16)
- 행정규제 관련 점검시 지적된 내용 삭제 및 반영
-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행위제한사항완화 및 오·탈자 수정

## □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도시계획법,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(별첨)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관계부처승인 : 해당없음
- 입법예고 : 2001. 7.19(의견 제출사항 없음)
- 기타사항 :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필

## 평창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를 삭제한다.

**별표1 제2호에 라목 및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**

- 라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
- 마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잡화시설중 전시장(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박물관, 미술관에 한하며,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12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)

**별표2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**

- 라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잡화시설중 전시장(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하며,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12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)

**별표3 제2호에 마목 내지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**

- 마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(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로서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)인 것
- 바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(병원에 한한다)
- 사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(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)
- 아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(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)
- 자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·기록매체복제업·봉제(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)·필름현상·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·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·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
  - (1)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
  - (2)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
  - (3)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
  - (4)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

- (5)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
- (6) 소음·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
- 차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(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것에 한한다)
- 카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주유소·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한다)
- 타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연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및 부화장에 한한다)

**별표4 제2호아목중 "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"를 "주유소·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"로 개정하고 동호에 차목내지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**

- 자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(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)
- 차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·기록매체복제업·봉제(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)·필름현상·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·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·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
  - (1)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
  - (2)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
  - (3)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
  - (4)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
  - (5)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
  - (6) 소음·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
- 카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(폐차장 및 매매장을 제외한다)
- 타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연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및 부화장에 한한다)
- 파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(군사시설, 전신전화국, 방송국,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, 통신용 시설에 한한다)

**별표5 제2호자목중 "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"를 "주유소·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"로 하고 동호에 차목 내지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**

- 차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·기록매체복제업·봉제(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)·필름현상·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·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·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
  - (1)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
  - (2)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

로서 동법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

(3)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

(4)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

(5)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

(6) 소음·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

카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(폐차장을 제외한다)

타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

파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(교도소, 감화원을 제외한다)

**별표6 제2호바목중 "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"를 "주유소·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"로 하고 동호에 아목 내지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**

아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3 제2호자목(1) 내지 (6)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공장

자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(폐차장을 제외한다)

차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

카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(야외음악당·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에 한한다)

**별표7 제2호에 라목 내지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**

라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(다른용도가 복합된 것에 한한다)

마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

바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

사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(출판·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공장으로서 별표3 제2호자목(1) 내지 (6)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)

아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·저장소를 제외한다)

자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(폐차장은 제외한다)

**별표8 제2호에 바목 내지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**

바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

사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3 제2호자목(1) 내지 (6)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공장

아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·저장소를 제외한다)

자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

**별표9 제2호에 사목 내지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**

- 사. 별표7 제2호사목의 공장
- 아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
- 자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
- 차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·저장소를 제외한다)

**별표10 제2호에 사목 내지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**

- 사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
- 아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
- 자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
- 차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

**별표11 제2호에 나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**

- 나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마목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
- 다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(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전용공업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)
- 라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(장례식장을 제외한다)
- 마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

**별표12 제2호에 마목 및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**

- 마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
- 바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

**별표13 제2호에 바목 내지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**

- 바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(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)
- 사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
- 아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
- 자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(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)
- 차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

**별표14 제2호에 다목 내지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**

- 다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(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하며, 단란주점을 제외한다)
- 라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되는 것
- 마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

- 바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의 학교(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)와 동호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
- 사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)
- 아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

**별표15 제2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**

- 다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(아파트를 제외한다)
- 라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나목 및 마목에 해당되는 것
- 마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(농·축·임·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)
- 바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의 학교(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)와 동호나목의 교육원(농·축·임·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) 및 동호다목의 직업훈련소
- 사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(도정공장·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·면지역에 건축하는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)
- 아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·저장소를 제외한다)
- 자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
- 차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

**별표16 제2호마목중 "위험물제조소를 말한다"를 "위험물제조소를 제외한다"로 하고 동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**

- 사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(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한다)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26조(행위허가의 취소 등)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설계변경 및 시설 보완을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법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</li> <li>2. 허가도서와 내용이 다른 공사의 경우</li> <li>3. 공사가 부실한 경우</li> <li>4.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공공사업 시행 등 도시계획사업상 필요한 토지로 확보 가 부득이한 경우</li> <li>5. 기타 도시정비상 필요한 경우</li> <li>6. 3차례 걸쳐 준공기간을 연기하고 준공하지 아니할 때</li> <li>7. 준공사유가 부당할 때</li> <li>8. 허가후 1개월이내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</li> <li>9. 정당한 이유없이 준공검사연기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준공기한을 경과 한때</li> <li>10. 본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</li> </ol>	<p>제26조(행위허가의 취소 등) (삭제)</p>

### 【별표 1】

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34조제1호관련)

2.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
 가. ~ 다. (생략)  
 라. ~ 마. (신설)

### 【별표 1】

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34조제1호관련)

2.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
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 
 라.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
 마.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(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 닉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박물관, 미술관에 한하며, 너비 12마터이

현 행	개 정 (안)
	상인 도로에 12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한 한다)
<b>【별표 2】</b>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34조 제2호관련)  2.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. ~ 다. (생략) 라. (신설)	<b>【별표 2】</b>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34조 제2호관련)  2.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라.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(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하며, 너비 12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)
<b>【별표 3】</b>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34조 제3호관련)  2.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. ~ 라. (생략) 마. ~ 타. (신설)	<b>【별표 3】</b>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34조 제3호관련)  2.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 마.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(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로서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)인 것 바.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(병원에 한한다) 사.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(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) 아.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(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

현 행	개 정 (안)
	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)
	자 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·기록매체복제업·봉제(의류편조업 을 포함한다)·필름현상·컴퓨터 및 주 변기기제조업·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 립업·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
	(1)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 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
	(2)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 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8의 규 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 에 해당하는 것
	(3)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 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
	(4)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 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 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 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
	(5)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
	(6) 소음·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
	자 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 설(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 다)
	카 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(주유소·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한다)

현 행	개 정 (안)
<p><b>【별표 4】</b></p> <p>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34조제4호관련)</p> <p>2.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</p> <p>가. ~ 사. (생략)</p> <p>아. ---(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에 한다)</p> <p>자. ~ 파. (신설)</p>	<p>타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연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이하의 축사 및 부화장에 한한다)</p> <p><b>【별표 4】</b></p> <p>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34조제4호관련)</p> <p>2.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</p> <p>가. ~ 사. (현행과 같음)</p> <p>아. ---(주유소·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에 한한다)</p> <p>자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(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자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)</p> <p>차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인쇄·기록매체복제업·봉제(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)·필름현상·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·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·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</p> <p>(1)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</p> <p>(2)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</p> <p>(3)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</p> <p>(4)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</p>

현 행	개 정 (안)
	<p>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</p> <p>(5)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</p> <p>(6) 소음·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이상인 것</p> <p>카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(폐차장 및 매매장을 제외한다)</p> <p>타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연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및 부화장에 한한다)</p> <p>파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(군사시설, 전신전화국, 방송국,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, 통신용 시설에 한한다)</p>

### 【별표 5】

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34조제5호관련)

2.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
- 가. ~ 아. (생략)
- 자. ----(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에 한다)
- 차. ~ 파. (신설)

### 【별표 5】

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34조제5호관련)

2.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
- 가. ~ 아. (현행과 같음)
- 자. ----(주유소·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에 한한다)
- 차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·기록매체복제업·봉제(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)·필름현상·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·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·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
- (1)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

현 행	개 정 (안)
<p>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34조제6호관련)</p> <p>2.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</p> <p>가. ~ 마 및 사. (생략)</p> <p>바. ----(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에 한 한다)</p> <p>아. ~ 카. (신설)</p>	<p>(2)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</p> <p>(3)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</p> <p>(4)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</p> <p>(5)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</p> <p>(6) 소음·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</p> <p>카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(폐차장을 제외한다)</p> <p>타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</p> <p>파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(교도소, 감화원을 제외한다)</p>
	<p>【별표 6】</p> <p>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34조제6호관련)</p> <p>2.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</p> <p>가. ~ 마 및 사.(현행과 같음)</p> <p>바. ----(주유소·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에 한한다)</p> <p>아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 3 제2호자목(1) 내지 (6)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</p>

현 행	개 정 (안)
	<p>자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(폐차장을 제외한다)</p> <p>차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</p> <p>카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(야외음악당· 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에 한한다)</p>
<b>【별표 7】</b>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(제34조제7호관련)	<b>【별표 7】</b>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(제34조제7호관련)
2.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. ~ 다. (생략) 라. ~ 자. (신설)	2.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. ~ 다.(현행과 같음) 라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(다른용도가 복합된 것에 한한다) 마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바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 사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(출판·인쇄 및 기록매체복제 공장으로서 별표3 제2호자목(1) 내지 (6)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) 아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(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·저장소를 제외한다) 자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(폐차장은 제외한다)
<b>【별표 8】</b>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(제34조제8호관련)	<b>【별표 8】</b>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(제34조제8호관련)

현 행	개 정 (안)
<p>2.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</p> <p>가. ~ 마. (생략)</p> <p>바. ~ 자. (신설)</p>	<p>2.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</p> <p>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바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사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3 제2호자목(1) 내지 (6)의 1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공장</p> <p>아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(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· 저장소를 제외한다)</p> <p>자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</p>
<p><b>【별표 9】</b></p> <p>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(제34조제9호관련)</p> <p>2.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</p> <p>가. ~ 바. (생략)</p> <p>사. ~ 차. (신설)</p>	<p><b>【별표 9】</b></p> <p>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(제34조제9호관련)</p> <p>2.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</p> <p>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</p> <p>사. 별표7 제2호사목의 공장</p> <p>아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</p> <p>자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</p> <p>차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(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· 저장소를 제외한다)</p>
<p><b>【별표 10】</b></p> <p>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(제34조제10호관련)</p>	<p><b>【별표 10】</b></p> <p>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(제34조제10호관련)</p>

현 행	개 정 (안)
<p>2.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. ~ 바. (생략) 사. ~ 차. (신설)</p>	<p>2.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. ~ 바.(현행과 같음) 사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아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자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 차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</p>
<p><b>【별표 11】</b>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(제34조제11호관련)</p> <p>2.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. (생략) 나. ~ 마. (신설)</p>	<p><b>【별표 11】</b>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(제34조제11호관련)</p> <p>2.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마목중 산업 전시장 및 박람회장 다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(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 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) 라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(장례식장을 제외한다) 마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</p>
<p><b>【별표 12】</b>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(제34조제12호관련)</p> <p>2.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</p>	<p><b>【별표 12】</b>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(제34조제12호관련)</p> <p>2.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</p>

현 행	개 정 (안)
수 있는 건축물 가. ~ 라. (생략) 마. ~ 바. (신설)	수 있는 건축물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 마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 구 및 복지시설 바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
<b>【별표 13】</b>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(제34조제13호관련)	<b>【별표 13】</b>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(제34조제13호관련)
2.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. ~ 마. (생략) 바. ~ 차. (신설)	2.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 바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(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다) 사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 설 아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 설 자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(당 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 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) 차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
<b>【별표 14】</b>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(제34조제14호관련)	<b>【별표 14】</b>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(제34조제14호관련)
2.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. ~ 나. (생략) 다. ~ 아. (신설)	2.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 다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

현 행	개 정 (안)
<p>【별표 15】</p> <p>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(제34조제15호관련)</p> <p>2.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</p> <p>가. ~ 나. (생략)</p> <p>다. ~ 차. (신설)</p>	<p>린생활시설(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하며, 단란주점을 제외한다)</p> <p>라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되는 것</p> <p>마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</p> <p>바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의 학교(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)와 동호사목 내자자목에 해당하는 것</p> <p>사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(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)</p> <p>아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</p>
	<p>【별표 15】</p> <p>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(제34조제15호관련)</p> <p>2.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</p> <p>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(아파트를 제외한다)</p> <p>라.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</p> <p>마.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(농·축·임·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)</p> <p>바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의 학교(중학교</p>

현 행	개 정 (안)
<p>【별표 16】</p> <p>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(제34조제16호관련)</p> <p>2.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</p> <p>  가. ~ 라. (생략)</p> <p>  마. ----(위험물제조소를 말한다)</p> <p>  바. (생략)</p> <p>  사. (신설)</p>	<p>및 고등학교에 한한다)와 동호나목의 교육원(농·축·임·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) 및 동호다목의 직업훈련소</p> <p>사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(도정공장·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·면지역에 건축하는 첨단 산업공장에 한한다)</p> <p>아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·저장소를 제외한다)</p> <p>자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</p> <p>차.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</p> <p>【별표 16】</p> <p>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(제34조제16호관련)</p> <p>2.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</p> <p>  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</p> <p>  마. ----(위험물제조소를 제외한다)</p> <p>  바. (현행과 같음)</p> <p>  사.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(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한다)</p>